

2009 전의경특채형법기출[윤황채교수]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형을 중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중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④ 위법성조각사유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적용 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반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대판 1977.9.28, 77도405).

② 대판 1999.9.17, 95도2870 ③ 대판 1995.1.24, 94도2787

④ 대판 1997.3.20, 96도1167

☞ 법1 겸2 겸3 형법판례때려잡기! [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9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 [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5~6쪽 4~5번문제 참조

2. 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 ㉠ 음행매개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도박개장죄 ㉣ 범죄단체구성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내란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② 박스에서 목적범이 아닌 것은 ㉡ 허위진단서작성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2개이다. 나머지 ㉠ ㉢ ㉣의 범죄는 목적범이다. ㉠ 영리의 목적, ㉢ 영리의 목적, ㉣ 범죄를 목적, ㉤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다.

☞ 법1 겸2 겸3 형법판례때려잡기! [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46쪽 8번문제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 [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35쪽 6번문제 참조

3. 다음 중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리적 책임론은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고의를 가

지고 행위를 한 피강요자가 책임이 조각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②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은 고의, 과실이 구성요건요소로 포함된다.

③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비결정론에 근거한다.

④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한다.

[정답] ④

[해설] ④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행위시를 기준으로 “범죄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재판시를 기준으로 “형벌능력”으로 이해한다.

☞ 법1 겸2 겸3 형법판례때려잡기! [도서출판 배움 윤황채] 184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 [서울고시각, 윤황채편저] 166쪽 4번문제 참조

4. 다음 법률의 착오 중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몇 개인가?

- ㉠ 유선비디오 방송은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 ㉡ 공문·도봉구청의 질의회신 등을 신뢰하여 미숫가루제조행위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믿고 별도의 허가 없이 미숫가루를 제조한 경우
- ㉢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 ㉣ 천지창조디스코클럽의 업주 A가 경기도 경찰국장의 공문을 믿고 고등학생 아닌 만 18세 이상인 미성년자를 들여보내 주류를 판매한 경우
- ㉤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출입금지표시를 출입구에 부착하라고 행정지도를 하였을 뿐인데 허용된다고 오인하고 공청회에 참석하여 음반법상 출입금지대상을 18세 미만의 자로 유지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하게 한 경우
- ㉥ 타인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잔존목을 허가 없이 벌채하여도 위법인 줄 모르고 벌채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② 법률의 착오 중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의 2개이다.

㉠ X. 대판 1987.4.14, 87도160, ㉡ O. 대판 1983.2.22, 81도2763, ㉢ X. 대판 1992.5.26, 91도894, ㉣ X. 법률의 부지. 대판 1985.4.9, 85도25, ㉤ O. 대판 2002.5.17. 2001도4077, ㉥ X. 법률의 부지. 대판 1986.6.24, 86도810

☞ 법1 권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 [도서출판 배움 윤형재] 209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 [서울고시각, 윤형재편저] 192쪽 15번 문제 참조

5. 다음 중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병역법위반)

㉡ 주거침입의 범의를 가지고 주거를 들어가는 문에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한 때(주거침입죄)

㉢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행위(절도죄)

㉣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바 없는 경우(배임죄)

㉤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강간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해설] 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의 1개이다.

㉠ X. 대판 2005.9.28, 2005도3065, ㉡ O. 대판 1995.9.15, 94도2561, ㉢ X. 대판 1983.3.8, 82도2944, ㉣ X. 대판 1986.7.8, 85도1873, ㉤ X. 대판 1990.5.25, 90도607

☞ 법1 권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 [도서출판 배움 윤형재] 227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 [서울고시각, 윤형재편저] 211쪽 9번 문제 참조

6. 다음 중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① 경찰관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A의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기 위해 A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

②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는바 그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지에 게재된 경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③ 수표발행인 아닌 자가 수표를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

면서 분실신고를 하라고 하자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수표발행인으로 하여금 허위신고를 하게 한 경우(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

④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권한자의 명의로 작성한 때(허위공문서작성죄)

[정답] ①

[해설] ① 경찰서 보안과장인 피고인이 갑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을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이상, 을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6.10.11, 95도1706).

② 대판 2002.6.28, 2000도3045; 대판 2004.4.9, 2004도340

③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이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2.11.10, 92도1342).

④ 대판 1981.7.28, 81도898

☞ 법1 권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 [도서출판 배움 윤형재] 317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 [서울고시각, 윤형재편저] 263쪽 3번, 265쪽 5문제 참조

7. 다음 중 죄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있어도 포괄일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③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④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 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해설] ④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이때에는 한 개의 죄만 성립한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 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2.7.23, 2001도6281).

① 대판 2004.11.12, 2004도5257, ② 대판 2001.8.21. 2001도3312, ③ 대판 2001.8.21. 2001도3447

☞ **법1 권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형재] 341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형재편저] 374~375쪽 33번, 35번 문제 참조

8. 다음 중 물수·추징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 ①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물수할 수 있다.
- ② 추징의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물수는 선고유예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도 부가형인 물수나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④

[해설]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5.14, 96도14).

① 대판 2000.5.12. 2000도745, ② 대판 1988.6.21, 88도551

☞ **법1 권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형재] 384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총론**[서울고시각, 윤형재편저] 383쪽 4번 문제 참조

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보통 살인의 경우 현행범상 집행유예까지 가능하다.
- ②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 있다.
- ③ 식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는 자로부터 식칼을 뺀 다음 흔쾌하면서 그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그 자의 머리를 가볍게 친 경우 그 식칼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해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 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②

[해설] ② 형법상 행위객체가 존속일 때 가중처벌하는 경우는 존속살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존속유기, 존속학대, 존속협박, 존속체포·감금이 있다. 그러나 재산죄나 과실범, 약취·유인죄의 경우에는 존속에 대한 범죄일지라도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 없다.

① 피고인에게 법원이 작량감경을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③ 대판 1989.12.22. 89도1570, ④ 대판 1983.4.26, 83도524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출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정합범 관계에 있다.
- ㉢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甲男이 乙女와 부르스 춤을 추면서 乙의 의사에 반하여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乙의 성적자유를 침해한 유형력을 행사하므로 甲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①

[해설] ① 틀린 것은 0개이다. 모두가 옳은 지문이다.

㉠ O. 대판 2005.4.15, 2003도2780, ㉡ O. 대판 2003.1.10, 2002도4380, ㉢ O. 대판 1982.6.22, 82도705, ㉣ O. 대판 2002.4.26, 2001도2417, ㉤ O.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합

☞ **법1 권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형재] 431, 438, 442, 456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형재편저] 86쪽 13번, 63쪽 3번문제 참조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 ②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일 필요는 없다.
- ③ 타인이 점유 경작하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점유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하는 경작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 결의와 시장번영회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②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거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판 1998.10.9, 97도158).

① 대판 1994.5.24, 94도600, ③ 대판 1977.10.11, 77도2502

④ 대판 2004.8.20. 2003도4732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형재] 483쪽, 504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형재편저] 110쪽 11번 문제, 132쪽 17번문제 참조

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주민등록증은 성명, 본적, 주소, 연령,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일 뿐이므로 경제적 가치 있는 재물이란 할 수 없다.

㉢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이란 할 수 없다.

㉣ 당구장에서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다른 손님이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②

[해설] ② 옳은 지문은 ㉠,㉢,㉤ 3개이다.

㉠ O. 대판 1996.10.15, 96도2227, ㉡ X. 대판 1969.12.9, 69도1627, ㉢ X. 대판 2000.2.25, 99도5775, ㉣ O. 대판 1988.4.25, 88도409, ㉤ O. 대판 1994.3.8, 93도2272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형재] 532, 548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형재편저] 181쪽 14번

문제 참조

13. 다음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아버지의 방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알고 절취하였는데 아버지의 물건이었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특수절도죄를 범한 범인 중 1인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이 면제를 받게 되더라도,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공범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사기죄에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④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

[정답] ③

[해설] ③ 법원을 기망하여 부(父)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부가 피해자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의 지문은 모두 옳다. ④ 장물범과 피해자가 근친인 경우 면제하고 원친인 경우 친고죄이다.

☞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형재] 537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형재편저] 166쪽 5~6번문제 참조

14. 다음 사례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범인들이 피해자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넘어지자 그를 5m 가량 끌고 가서 피해자가 상처가 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절도범들이 날치기 방법으로 절취를 하자, 피해자가 핸드백을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넘어져 우연히 손가락에 골절상이 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강도범이 강취현장에서 자신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m 쯤 끌고 가서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④ 절취의 범행 중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가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진 강제력으로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판 2007.12.13, 2007도7601).

② 피해자의 상해가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수법의 절도시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고, 그에 수반된 강제력 행사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 또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강도치상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대판 2003.7.25. 2003도2316).

③ 대판 1984.6.26, 84도970, ④ 대판 1987.9.22, 87도1592

☞ **법1 제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 [도서출판 배움 윤형재] 568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 [서울고시각, 윤형재편저] 230쪽 71번 문제참조**

15. 다음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된 경우에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게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이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불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본사와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형태인 이른바 가맹점(프랜차이즈)계약을 맺은 가맹점 주인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중인 물품 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표이사가 자신의 다른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가공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가공의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임의로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횡령죄에서는 처분행위의 종료라는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 있어야 횡령죄의 기수가 된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해설] ②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 1개이다.

㉠ X. 대판 2003.5.30, 2003도1174, ㉡ X. 대판 1998.4.14, 98도292, ㉢ X. 대판 2000.4.11, 2000도565, ㉣ O. 대판 2008.11.13, 2006도4885, ㉤ X. 대판 1993.3.9. 92도2999

☞ **법1 제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 [도서출판 배움 윤형재]**

648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 [서울고시각, 윤형재편저] 322쪽 55번 문제참조**

16.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질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의 변경만을 한 경우,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색상을 고친 것만으로는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일본에서 일본국 500¥짜리처럼 사용할 의도로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은 경우 통화변조죄에 해당한다.

㉣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 발행권 10,000원짜리 지폐를 복사한 경우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③ 사례에서 옳은 것은 ㉠, ㉡, ㉢의 3개이다.

㉣ X. 대판 2002.1.11, 2000도3950, ㉠ O. 대판 1979.8.28, 79도639, ㉡ O. 대판 2004.3.26, 2003도5640, ㉢ O. 대판 1985.4.23, 85도570

☞ **법1 제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 [도서출판 배움 윤형재] 777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 [서울고시각, 윤형재편저] 459쪽 17번 문제참조**

17.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자신의 모(母)의 것인데 모(母)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타인의 이름으로 이동전화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 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 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진정한 사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든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甲구청장으로 있다가 乙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甲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한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③

[해설] ③ 옳은 지문은 ㉠, ㉡ 2개이다.

㉠ 대판 2003.2.26, 2002도4935, ㉡ 대판 2001.3.9, 2000도938,

㉢ 대판 2001.1.5, 99도4101, ㉣ 대판 2000.9.5, 2000도2855

㉤ 대판 1993.4.27, 92도2688

☞ **법1 권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형재] 802, 803, 813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형재편저] 487쪽 23번 문제참조

18. 수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② 증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수뢰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④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으나 제3자가 교부받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뢰물전달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9.5, 97도1572).

① 대판 1999.1.29. 98도3584 ③ 대판 2000.1.21. 99도4940

☞ **법1 권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형재] 896, 906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형재편저] 595쪽 12~13번문제 참조

19. 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공립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 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허위 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의 자료가 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수사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입청약을 하고 전화를 가설하였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수사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1.3.9, 71도186).

① 대판 1983.9.27, 83도1864, ③ 대판 1977.12.27, 77도3199

④ 대판 2003.7.25, 2003도1609

☞ **법1 권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형재] 925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형재편저] 621쪽 4번 문제 참조

2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은 이상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 없다.
- ③ 민사소송 당사자가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을 때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④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②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5.9.24, 84도1737).

① 대판 1998.2.10, 97도2961

③ 대판 1998.3.10, 97도1168

④ 대판 1992.10.13. 92도1799

☞ **법1 권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윤형재] 974쪽 참조

☞ **객관식 판례형법각론**[서울고시각, 윤형재편저] 685쪽 6번 문제, 689쪽 14번문제 참조

*****윤황채 형사법수험서*****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음 2008 개정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국민고시각 2008.제5판]
- 3. 합격20일작전 경찰형법실전모의고사[미래가치2008]**
-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7.개정판]
5. 형법조문노트[도서출판 예음 2009 초판]
- 6. 객관식판례형법[총론,각론][서울고시각2007]**
- 7. 법1점2경3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2008]**
- 8. 법1점2경3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2008]**
- 9. 법1점2경3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2007]**

교재문의는 부산 한겨레고시학원(051-808-4512)
서울 노량진 한국서적 02-814-7391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 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수원 국가경찰학원 031-258-0011
대방 국가경찰학원 02-6332-0011